

일본 “환경배려계약법(環境配慮契約法)”의 개요

이 두 령 (일본입정대학 법학부 전임강사, 일본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

I. 들어가며

최근 지구 전체의 차원에서 환경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토의정서¹⁾ 채택이후 각 국에서는 CO₂(이산화탄소) 등을 삭감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내 환경법을 정비하는 등 여러 방면(정책적 측면, 기업에 대한 친환경 유도 등)에서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에서는 온실효과가스(溫室化, CO₂)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을 함에 있어 중앙정부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기본방침을 책정하며, 중앙정부 등이 배출하는 온실효과가스 등의 삭감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환경배려

계약법(정식명은 “~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する法律”)이 제정²⁾되었다.

즉, 이 법률은 정부가 구입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 할 때 환경 부하를 삭감할 수 있는 계약을 우선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다. 전체 제13조로 구성된 법률로 그린(green) 계약을 추진하기 위함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린계약법(グリーン契約法)”이라고도 한다.

정부도 민간인과 같이 전력을 구입하는 행위(정부는 최대의 수요자이기도 하다), 공무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시설

1)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을 말한다. 즉, 지구온난화를 유도하는 물질로 감축대상인 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₆)이며, 현재 선진국(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르면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2) 본 법은 2007년 5월 23일 法律 第56號로 公布되었으며, 2007년 11월 22일자로 施行 중이다.

사용 등에 필요한 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지구 온실화를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려는 의도로 “환경배려계약”에 의한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친환경적 배려를 하는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개관하기로 한다. 더불어 본 법이 가지는 의의와 기본 방침, 그리고 환정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출선수 범하는 정부의 역할(친환경제품 구입 계약) 등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평가로 가름하려 한다.

II. 추진 내용

1. 친환경배려적 계약의 필요성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도 환정보전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민간(기업)과 같은 차원에서 전기 등의 수요자로서 CO₂(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이하와 같은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등유나 가스의 소비를 줄일 것 ② 전기의 사용을 줄일 것 ③ CO₂ 배출 계수의 낮은 전력을 구입할 것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소비를 위한 계약의 경우 친환경적인 계약형태를 채택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친환경배려적 계약의 기대효과

이러한 배경과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2002년도에 대비하여 8%의 삭감을 2010년~2012년도의 평균 배출량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각의결정(閣議決定)³⁾하였다.

〈표 1〉 환경배려계약법의 배경

현재의 과제

1.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2012까지 8% 삭감)
2. 효율적 예산 활용의 필요성
3. 저렴한 제품의 활용(국민의 세금)으로 인한 폐해 개선



정부의 환경배려의 필요성

1. 경쟁을 촉진하며, 환경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필요성
2. 정부가 사용하는 청사, 서비스, 제품에 도입
3.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친환경 제품 유도



정부는 최대의 수요자라는 인식

1. CO₂(이산화탄소) 단위가 적은 전력 구입
2. CO₂(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자동차 사용
3. 환경배려형 시설 구비, 연료비 절감
4. 전기료 등을 절감하는 청사 신설



효과

1. 환경에 적극적인 기업이 유리한 사회구축
2. 환경과 양립하는 경제구조의 구축이 가능

3) 지구온실화 대책을 위한 정부의 실행계획(실제명칭 “地球温暖化防止のための政府*行計B, 2007年3月 閣議決定”)을 정하여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를 8%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1.2%의 삭감에 머물렀다. 전기에 수반하는 CO₂를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실시할 것을 선정하였다. 지구온실화를 유도하는 많은 원인 중에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정부가 구입하는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기대한다. 즉, 민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정부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친환경적 구매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선은 많은 지출이 예상되나, 장래에는 싼(저렴한) 제품보다 큰 효과를 가져 온다는 계산에서 실시된다. 즉, 효과적인 예산의 활용을 전제로 운영한 결과,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취지는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배려계약법”은 정부가 최대의 소비자 입장에서 민간 기업과의 제품, 서비스의 계약에서, 경쟁을 재촉하며, 정부가 지불하는 환경 대책 비용을 총체로서 경감하는 것에 결합하는 계약의 체결 수법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본 법은 먼 장래를 위해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업이 유리하다는 유도적인 차원에서의 역할도 존재한다.

Ⅲ. 주요 내용

환경배려계약법이 추구하는 내용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앙정부 등이 배출하는 CO₂(이산화탄소) 등의 삭감을 도모하며, 그로 인하여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의 意義와 목적

정부 등에 의한 환경부하(環境負荷)(본 법의 대상은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이다.)를 삭감하기 위해 정부 등이 계약을 맺는 경우, 경쟁을 재촉하며 가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환경 성능을 가지는 물품·역무(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계약상대로 정함으로써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사회의 구축을 실현한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중앙정부 등이 온실효과가스(溫室化)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하여 중앙정부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기본방침의 책정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정부 등이 배출하는 온실효과가스 등의 삭감을 도모하며, 따라서 환경에 부하(負荷)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법률의 정의 규정(대상자 등)

본법에서 “온실효과가스등”이란 온실효과가스 그 이외 환경에 부하(負荷)(환경기본법(2002년 법률 제91호) 제2조 제1항⁹⁾에 규정하는 환경에의 부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제2조 제1항), 본법에서의 “국가

(중앙정부)”란 중앙정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 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제2조 제2항).

그리고 본법에서 “독립행정법인등”이란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通則法 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또는 특수법인(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특별한 설립 행위를 가지고 설립된 법인이며, 총무성설치법(總務省設置法 1999년 법률 제91호) 제4조 제15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자본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출자에 의한 법인 또는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의 주된 재원을 중앙정부의 교부금 혹은 보조금에 의한 법인이며,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항).

또한 본법에서 “지방독립행정법인”이란 지방 독립행정법인법(地方獨立行政法人法 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 독립행정법인을 말하며(제2조 제4항), “각성각청의 장(各省各廳의 長)”이란 재정법(財政法 1947년 법률 제34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성각청의 장(各省各廳의 長)을 말한다(제2조 제5항).

3. 중앙정부 등의 책무와 채무부담 등

먼저 환경배려적인 계약을 위해서 중앙정부 및 독립행정법인등은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며 적절한 사용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경제성에 유의하면서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중앙정부 및 해당 독립행정법인등이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표 2〉 중앙정부 및 독립행정법인 등 책무

- 에너지의 합리적이며 적절한 사용 등 (수요면)
- 환경배려계약의 추진(공급면) 환경대신(環境大臣)이 각 대신(大臣) 등에 필요한 요청



- “기본방침”의 책정
- 환경배려계약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



- 각 대신(大臣)은 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배려계약의 추진을 위한필요한 조치를 강구
- 각 대신(大臣) 등은 환경배려계약의 체결의 실적 개요를 정리하여 공표

이러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에너지 절약(원어-省エネルギー) 개수사업(改修事業⁵⁾)”에

4) 일본 환경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환경에의 負荷”란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이며, 환경의 보전상의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5) 에너지 절약(省エネルギー) 改修事業(ESCO = ENERGY SERVICE COMPANIES 사업이라고도 한다)이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청사의 공용에 수반하는 전기, 연료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해당 청사의 구조, 설비 등의 改修와 관련된 설계, 시공, 유지 보전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 이상의 액의 삭감을 보증하고, 해당 설계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그리

있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의해 지출해야 할 연한은 해당 회계년도 이후 10년 이내로 한다(제7조).

(1) 계약체결 실적의 개요의 공표

그 이외 중앙정부 등의 임무로는 계약체결 실적 개요의 공표를 하여야 한다. 즉, 각성각청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들의 장은 매회계년도 또는 매사업년도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 체결의 실적 개요를 정리하여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대신에 통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그리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대신에의 통지는 독립행정법인들의 장의 경우 해당 독립행정법인들의 주무대신을 통하여 실시한다(제8조 제2항).

(2) 환경대신의 요청

환경대신은 각성각청의 장에 대해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

(3) 중앙정부의 정보의 정리

중앙정부는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독립행

정법인등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0조).

(4)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책무와 추진

①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책무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실시를 위해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며 적절한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실시하며, 지방독립행정법인의 경우 그 사무 및 사업에 따라서 경제성에 유의하면서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소도 고려하며, 해당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②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의 추진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을 위해 해당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방침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고 ESCO 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시설의 설비 시스템 등에 가장 적합하며, 창의적인 연구를 최대한 감안한 기술 제안 그 이외의 요소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日本 環境省, 環境配慮契約法基本方針, 討 ESCOワーキンググループ, “省エネルギー改修事業に係る契約に...する解 資料(案)”, 2007年 10月 2日 자 자료 참조.

한다(제11조 제1항).

그 방침은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야 하며, 지방독립행정법인은 그 사무 및 사업에 따라서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종류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11조 제2항).

그리고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제11조 제1항의 방침을 작성했을 때에는 해당 방침에 근거하여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또한 지방공공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은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 체결의 실적 개요를 정리하여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표 3〉 지방공공단체등의 책무

- 에너지의 합리적이며 적절한 사용
 - 환경배려계약의 추진
- 환경배려계약의 추진 방침의 작성

(5) 기본방침의 설정 내용

중앙정부 및 독립행정법인등은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그 기본방침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 1)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방향
- 2)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중점적으로 배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① 전기의 공급을 받는 계약
 - ② 사용에 수반한 온실효과가스등을 배출하는 물품의 구입과 관련되는 계약
 - ③ 에너지 절약(省エネルギー) 개수사업(改修事業), 이는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고, 청사의 공용에 수반하는 전기, 연료 등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 해당 청사의 구조, 설비 등의 보수·수리와 관련되는 설계, 시공, 유지, 보전 등(이하 이 호에서는 “설계등”이라고 한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 이상의 액의 삭감을 보증하고, 해당 설계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에 서도 같다.)과 관련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④ 건축물에 관한 계약 그 이외 중앙정부 및 독립행정법인등의 계약에 해당하며, 앞2호에서 열거하는 계약 이외의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6)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地球温暖化 策の推進に 関する法律)” 제20조의2 제1항에서는 정부는 교토의정서의 목표 달성 계획에 입각하여 그 사무 및 사업에 관해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의 삭감 및 흡수 작용의 보전 및 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계획(“정부실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책정하는 한이라고 정하고 있다.

삭감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⑤ 그 이외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본방침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 117호)” 제20조의2 제1항⁶⁾에서 규정하는 정부실행계획의 실시의 효과적인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배려하여야 한다.

4) 환경대신은 각성각청의 장 등과 미리 (중앙 정부 있어서는 각성각청의 장, 독립행정법인등에 있어서는 그 주무대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협의하여 기본방침안을 작성하여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성각청의 장과의 협의에 있어서는 환경대신이 기본방침으로 정해지는 계약과 관련되는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과 공동 작성하는 안에 근거하여 이것

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환경대신은 제4항의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방침을 공표해야 한다.

7) 전3항의 규정은 기본방침의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6) 기본방침에 의한 계약의 추진

그리고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을 위해 각성각청의 장 및 독립행정법인등의 장(해당 독립행정법인등이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이하 같다.)은 기본방침의 규정에 따라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6조).

(7) 공정한 경쟁의 확보

그 이외에 중앙정부 등은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표 4〉 기본방침 책정

1. 전력 구입시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고려
2. 자동차 등 내구재의 구입시 운영코스트의 고려
3. ESCO 사업에 의한 설비 등의 개수(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체결)
4. 청사나 설비 설계 등에 관한 계획(기획), 경쟁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방침에 근거한 일체화 추구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게 공정한 경쟁의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제12조).

(8) 다른 시책과의 조화

그리고 중앙정부 등은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다른 중앙정부 등의 계약에 관한 시책과의 조화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을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 에너지정책기본법(2002년 법률 제71호) 제12조 제1항⁷⁾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근거하는 시책 그 이외의 중앙정부 등의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 등에 관계가 있는 시책과의 조화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3조).

IV. 마치면서(시사점과 평가)

본법에서는 중앙정부 및 독립행정법인등이 체결하는 경우, 하나의 예로 전기 공급의 계약에 있어서 전기의 가격 및 온실효과가스등 배출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및 환경에 부하의 절감을 위

한 실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려 한다는 점이 현재의 방식(최저가 낙찰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실시 중이다.

즉, 현재 실시 중인 낙찰 방식은 배출 계수 등이 일정 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인정한 다음 가격이 최저의 자를 낙찰자로서 결정하는 것이나, 종합평가낙찰방식은 실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가격과 배출 계수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현재 이 종합평가낙찰방식이 정식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나, 이러한 평가를 위한 조치를 중앙정부에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계약 상대자인 전기사업자의 온실효과가스등의 배출의 삭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원 구성의 변경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 등을 감안한 후,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그리고 특히 본 법의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 등이 기본방침을 책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전력 구입시,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고려할 것과 자동차 등 내구재의 구입시 운영코스트의 고

7) 일본 에너지政策基本法(エネルギー政策基本法) 제12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제1항은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 이라고 한다.)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항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정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2 에너지의 수급에 관해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강구하는 시책, 3,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 에너지에 관한 기술 및 그 시책, 4, 전3호 이외, 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려할 것, 그리고 ESCO사업에 의한 설비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체결하며, 청사나 설비 설계 등에 관한 계획(기획),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을 책정한다.

또한 관공소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를 구입함으로써 인해 장래에는 연비가 나쁜 이유로 유지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보다 조금은 가격이 비싼 가격이지만 환경성능이 좋은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세금의 부담을 절감하며, 친환경적인 제품(하이브리드 자동차)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얻는 효과가 배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부의 계약(구입)은 바로 국민의 권익에도 결부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앙정부 등이 친환경적인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함(그린 계약)으로 인해 환경에 적극적인 기업이 유리한 사회구축을 형성한다는 측면과 더욱이 환경과 양립하는 경제구조의 구축을 현실화 하려는 움직임이 지구온실화를 저감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이 정당화되는 것이다.